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2024. 12.(통권 제8호)

I. 10월에 발의된 법률안 소개

II. 10월에 공포된 법률 소개

III.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 제도 소개

1년 동안 최신 입법 트렌드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부터는 “카드뉴스”로 새롭게 최신 입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목차

I. 10월에 발의된 법률안 소개 1

1. 통계
2. 지역상권법(백종원법) 개정안 소개
3.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 법률안 58선
 - 행정 19건
 - 경제 24건
 - 사회문화 15건

[바로가기](#)

II. 10월에 공포된 법률 소개 14

1. 통계
2.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소개
3. 법제조정정책관실 지원 실적

[바로가기](#)

III.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 제도 소개 20

1. 제도 내용
2. 지원방법
3. 제22대 국회 추진실적
4. 10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한 쟁점검토 사례

[바로가기](#)

I

10월에 발의된 법률안 소개

1. 통계

-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총 660건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은 618건¹⁾(93.6%), 정부제출 법률안은 42건(6.4%)이다.
 - * 상임위 위원장 대안 없음

- 4년 전과의 비교
 - 2020년 10월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총 402건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은 386건(96.0%), 정부제출 법률안은 16건(4.0%)이다.
 - * 상임위 위원장 대안 없음

- 작년과의 비교
 - 2023년 10월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 위원장 대안 포함 총 225건이다.
 - 의원발의 법률안은 208건(92.4%), 정부제출 법률안은 17건(7.6%)이다.
 - * 상임위 위원장 대안 없음

■ 제21대 국회와의 비교표

		전체 건수	의원 발의 법률안	정부 제출 법률안	상임위 위원장 대안
제22대	2024. 10.	660	618	42	0
	2023. 10.	225	208	17	0
제21대	2020. 10.	402	386	1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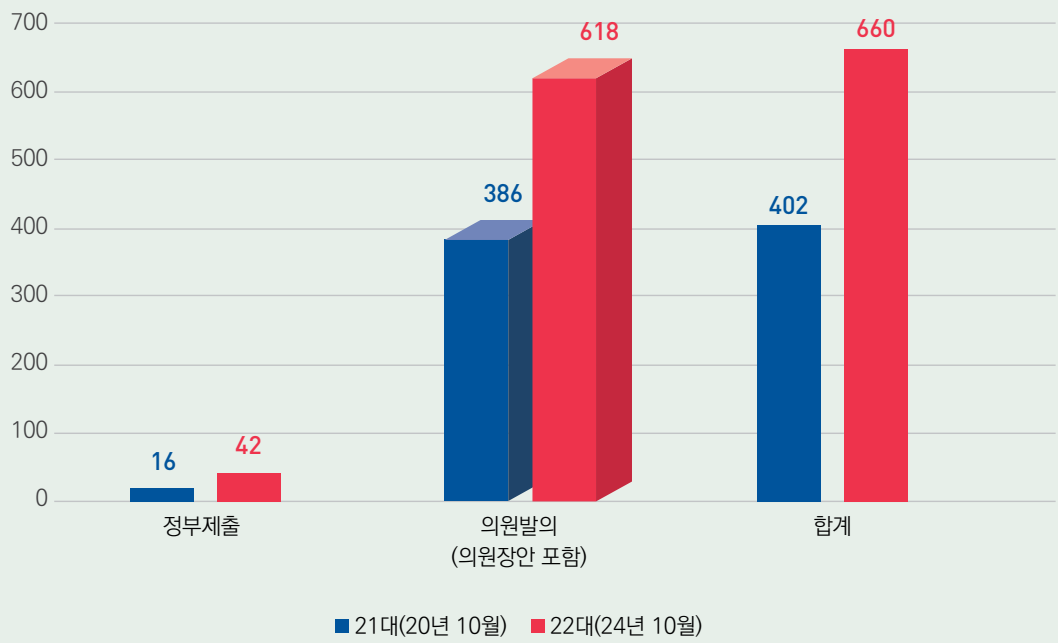
1) 10월 발의되어 같은 달 철회된 법안 1건이 포함된 수치임



■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비교표

월	전체 건수	의원발의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상임위 위원장 대안
2024. 6.	1,067	1,059	51	3
2024. 7.	1,241	1,099	140	2
2024. 8.	992	963	21	8
2024. 9.	969	914	18	37
2024. 10.	660	618	42	0

■ 제21대 국회 직후 시기(20년 10월)와의 비교 그래프



2. 지역상권법*(백종원법) 개정안 소개

*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음. 이하 같음.

- 2024년 10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618건 중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483호)의 내용을 대표로 소개한다.

■ 기본 정보

- 지역상권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2일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의원발의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추진 배경

- 2022년 4월 제정·시행된 지역상권법은 당시 서울 가로수길, 경리단길, 삼청동, 성수동 카페거리 등 주로 서울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 그러나 지역상권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현행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지정된 구역의 사업 지원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마침 입법모델화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바로 재정비된 **예산상설시장**이다. 민간 주도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이를 창의적 비즈니스모델화 하는 방안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 개정안의 방향은 상가를 운영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①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② **상권발전기금**을 세우며, ③ **상권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의 모태가 된 예산시장 발전기

- 지난 2023년 1월 9일 예산시장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지휘하에 재정비되었다.
- 예산시장은 100년 넘는 지역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주민들의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이용 등으로 활기를 잃게 되었다. 이에 예산군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와의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였다.
- 3년간의 시장 정비기간을 거쳐 '23. 1. 9.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 했다. 그 결과 재정비 전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30명 이내였는데, 재정비 이후 한 달 동안 10만명이 다녀갔고, 올해만 370만 ('24. 11. 25. 기준)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Before



After

■ 주요 내용

○ 상권기획자 등록제도 신설

- 상권기획자란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실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정 시설·인력·자본금·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상권기획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지역상권 발전전략 기획 · 수립 및 실행
- ②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운영
- ③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보육 및 투자
- ④ 지역상권 내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 및 관리
- ⑤ 위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상권기획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가능).

○ 상권발전기금 도입

- **상권발전기금**이란 지역상권의 발굴 · 활성화, 관리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 **기금의 재원**은 지역상권 구성원의 출연금, 국가 · 지자체의 출연금 · 보조금, 사업 수익금 등이다.

- 기금을 활용한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상권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② 지역상권의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③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전문보육 등 역량강화 사업
- ④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상권투자조합 신설

- **상권투자조합**이란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를 위하여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업무집행조합원(1인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상권기획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② 유한책임조합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부담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 ②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④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담보권 실행으로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⑤ 상권투자조합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행위



3. 키워드로 보는 의원발의 법률안 58선²⁾

2024년 10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618건 중 주요 법률안 58건(행정 19건, 경제 24건, 사문 15건)을 키워드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행정 19건

○ 일부개정안 13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경찰청	10. 21.	2204792	경범죄 처벌법	암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10. 30.	2205080	지방교육교부금법	영유아 보육사업 재정지원 특례 규정 영유아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을 교육청 예산(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되도록 함
	10. 30.	2205081	교육자치법	영유아 보육사업 규정 이관 영유아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함
국조실	10. 25.	2204908	학교보건법	마약중독 예방교육 강화 -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함
	10. 4.	2204573	청년기본법	보호종료된 청년에 대한 지원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10.10.	2204641	국적법	결혼이민자 귀화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허가절차 중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 3개 법제국(행정, 경제, 사회문화) 소관 법률별, 부처명 가나다순 및 법 제명 가나다순으로 소개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법 무 부	10. 31.	22051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유족구조금 -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10. 7.	2204587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 설정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
	10. 2. 10. 31.	2204499 2205109	형법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흥기소지죄 신설 -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통 일 부	10. 29.	2205009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원활한 국내정착을 지원함
행 안 부	10. 31.	2205089	접경지역법	정주생활지원금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5도의 인근 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10. 31.	2205127	주민소환법	주민소환투표 연령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 등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개선함
	10. 4.	2204558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함



○ 전부개정안 1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교육부	10. 30.	2205056	고등교육법	교육부 권한 축소,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 교육부장관의 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함 •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대해 학사·석사·박사 학위 통합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 5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교육부	10. 22.	220483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영위기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등 지원 •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 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학교법인 적립금 사용 및 학교 재산 처분 등에 대해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0. 21.	2204803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감 중심의 학교 위치 결정 •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부여함
법무부	10. 4.	2204526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 등록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처우개선 토대를 마련함
외교부	10. 24.	2204899	독도 및 동해의 영 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행안부	10. 2.	220450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 •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도모함



■ 경제 24건

○ 일부개정안 22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공 정 위	10. 11.	2204656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함
	10. 31.	220514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 •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0. 29.	2205014	전기통신사업법	취약계층 디지털이용권 지급 •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요금 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꿈
과 기 정 통 부	10. 29.	2205021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
	10. 4.	2204517	정보통신망법	마약류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10. 29.	2204993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함
국 토 부	10. 31.	2205076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공동복리시설의 관리 및 지원 •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 복리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복리시설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0. 23.	2204855	민간임대주택법	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국 토 부	10. 16.	2204731	주거급여법
			관리비 지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으로 한정된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함
	10. 24.	2204870	주택도시보증법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대상여부 등) 제공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금 융 위	10. 25.	2204919	자본시장법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제도 개선 -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에 맞춰 투자계약증권 등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인 증권에 대해서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관한 제도를 적용받도록 함 -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10. 25.	2204921	전자증권법
			주식 등의 전자등록·관리에 분산원장* 기술 도입 - 효율성, 보안성, 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식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 체계
기 재 부	10. 4.	2204533	복권법
			복권사업의 건전성 도모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
산 통 부	10. 2.	2204507	분산에너지법
			지역별 전기요금제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력자급률(전력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0. 17.	2204760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해외유출 제재 강화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공개 및 벌칙을 강화함
	10. 4.	2204570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관계행정 기관에 대하여 법령정비·검토의무를 부여함
	10. 2.	2204513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영업규제 시간에도 새벽배송 등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이들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재량사항으로 변경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중 기 부	10. 25.	2204902	소상공인법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법 또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10. 2.	2204483	지역상권법	상권기획자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특 허 청	10. 4.	2204559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벌칙을 신설함
	10. 25.	2204925	실용신안법	증거수집제도 개선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가 상호간에 직접 신문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의 점유·관리·보관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0. 25.	2204924	특허법	

○ 제정안 2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과 기 정 통 부	10. 30.	2205074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 - 국가는 선진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과기부장관은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
산 통 부	10. 23.	2204859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산업 - 기후변화대응 및 국가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원전산업기반을 구축함 - 소형모듈원전 상용화 및 원전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사회문화 15건

○ 일부개정안 11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고 노 부	10. 11.	2204663	남녀고용평등법	경조사 휴가기간 차별 금지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10. 22.	2204816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 범위 확대 “건강손상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넓혀 부계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자녀의 건강 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문 광 부	10. 4.	2204528	체육시설법	체육시설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는 폐업 등으로 회원, 일반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복 지 부	10. 11.	2204672	국민건강증진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표시 전자담배의 전자장치등 흡연전용기구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담배광고 제한규정의 대상에도 포함 되도록 함
	10. 8.	2204625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함 - 사업장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각각 기준 월소득액의 4.5%에서 6.5%로 인상함
	10. 31.	2205092	농어촌의료법	공중보건 의사 배치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에도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 될 수 있도록 함
여 가 부	10. 29.	2205005	양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전환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함
	10. 8.	2204627	인신매매방지법	소관부처 변경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및 범죄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으로 이관함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여가부	10. 28. 2204979	청소년 보호법	노래방·PC방 규제 완화 ·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제외함 ·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함
해수부	10. 30. 2205062	항만법	탄소중립항만 ·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용어 변경함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유통으로 명확히 함
환경부	10. 17. 2204759	순환경제사회법	의류 폐기 금지 ·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 4건

발의일	의안번호	의안명	키워드
농식품부	10. 31. 2205113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임
복지부	10. 31. 220513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함 ·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 ·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함
	10. 31. 2205112	문신사법안	문신 ·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수부	10. 2. 2204493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 ·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



II

10월에 공포된 법률 소개

1. 통계

■ 2024년 10월에 공포된 제·개정 법률은 총 77건이다.

- 제정 1건³⁾, 일부개정 76건이다.
- 77건 중 의원발의안 24건(54.5%), 위원장 대안 34건(13.6%), 정부제출안은 19건(31.8%)이다.
※ 34건의 위원장 대안은 의원발의안 167건, 정부제출안 7건을 대안반영폐기하고 발의되었다.
- 의원발의안으로 통과된 법률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의 합계는 58건이다.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는 10월에 공포된 의원발의법률안(대안 포함) 58건 중 6개 법률안에 대하여 8건의 법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지원 내용은 18쪽~19쪽 참고

■ 4년 전과의 비교

- 2020년 10월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총 69건이다.
- 69건 중 의원발의안 36건(52.2%), 위원장안 24건(34.8%), 정부제출안은 9건(13.0%)이다.
※ 위원장안 24건 중 21건은 의원발의안 68건, 정부제출안 5건을 대안반영폐기하고 발의되었고, 3건은 대안반영폐기안이 없는 순수한 위원장안이다

■ 작년과의 비교

- 2023년 10월에 공포된 제·개정 법률은 총 88건이다.
- 88건 중 의원발의안 41건(46.6%), 위원장 대안 44건(50%), 정부제출안은 3건(3.4%)이다.
※ 44건의 위원장 대안은 의원발의안 197건, 정부제출안 5건을 대안반영폐기하고 발의되었다.

3)「한류산업진흥 기본법」(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2.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소개

■ 기본 정보

- '24. 10월에 공포된 제·개정 법률 77건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제2200316호)”의 내용을 소개한다.
- 해당 법률안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6.)에서 수정가결되었고, 제418회(정기회) 국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4. 9. 25.)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24. 9. 26. 제418회(정기회)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4. 10. 22. 공포되었다.

■ 추진 배경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 영세 소상공인은 이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 2022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수는 427만명에 육박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사례]

- (숙박업)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사전 예약 후 출입할 경우 영세사업주는 미성년자 혼숙을 차단하기 어렵고, 동성끼리 숙박료 지불 후 먼저 들어가고 이성 이용자는 나중에 몰래 들어오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
- (노래방) 가방 속에 캔맥주 등을 숨겨서 들어온다면 영세사업주는 이를 적발하기 매우 어려움

- 2020년 11월 ~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 숙박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 활용업체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타 애로사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미성년자 혼숙 예약’이었다.

* 미성년자 혼숙 예약 49.6%, 환불분쟁 27.0%, 거짓리뷰 23.4% (중소기업중앙회, '21. 2. 발표)

-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이를 악용한 셀프신고 등으로 업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던 상황이다.

〈2.8.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 올해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례가 이슈가 되었다.

-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선량한 영업자 보호를 위하여 5개 법률*의 개정을 위해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음악산업법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 작년 4월 법제처는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다.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선호도〉



■ 주요 내용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

-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같이 추진한 다른 4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음악산업법)에도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규정이 신설됨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 같이 추진한 4개 법률 중 2022년 9월 27일에 이미 개정된 음악산업법을 제외한 3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됨



3. 법제조정정책관실 지원 실적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은 최근 공포된 제·개정법률 77건 중 의원발의법안(대안 포함)으로 발의되어 통과된 58건 중 6개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발의 전 예비검토 4건, 발의 후 사후검토 2건, 부처 간 이견 조정 2건 등 총 8건의 법제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⁴⁾.

■ 예비검토 의견이 법률 제·개정 내용에 반영된 사례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903호, 2024년 7월 18일 발의)의 경우 법제처 예비검토 의견이 반영되어 발의되었다. 국회는 이를 다른 의원발의안 및 정부안과 합쳐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제2204304호)으로 국회 통과되어 지난 10월 22일 공포되었다.

- (법률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 (소관부처 주요질의) **시장·군수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조성계획 작성 및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다.

- (법제처 검토의견)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할구역에서 직접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적⁵⁾으로 반드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입법취지나 정책방향은 아니라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여 전달했고, 소관부처는 이 내용을 반영한 상태로 의원발의하였다.

■ 사후검토 의견이 법률안에 반영된 사례

○ 대표적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098호, 2024년 7월 22일 발의)의 경우 법제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어 지난 10월 22일 공포되었다.

- (법률안 주요내용) 어항의 배후에 있지만, **일부지역이 현행법상 어촌에 해당되지 않고, 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지역을 어촌으로 인정하여 그곳에 있는 어가(漁家)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4) **예비검토**: 정부제출안이 아닌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의원발의 전이나 대안발의 전에 법제처가 소관부처에 법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검토: 국회의원이거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후에 법제처가 소관부처에 법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견조정: 발의 전 또는 발의 후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소관부처와 이견이 있는 관계부처 간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본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어촌·어항법」 등의 입법례가 있다.



- (법제처 검토의견) 법제처는 개정안과 같이 어촌의 정의규정을 직접 개정하기보다 수산직불제법 전체에 적용되는 **어촌의 정의규정** 및 범위는 현행 **그대로 두어** 해양수산 관계 법률에서 어촌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일관성·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개정취지와 직접 연관된 규정인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접 지불금에 관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의 범위만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하였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되었다.

■ 법제 지원의 세부 내용

구분	의안번호	법 제명	내용
1	예비검토 2201592	우체국예금보험법 (일부개정)	■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024. 7. 10. 발의 • 2024. 10. 16. 공포, 10. 25. 시행
2	이건조정 220002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2024. 5. 30. 발의 •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3	사후검토 2202098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	■ 어항 배후에 있는 어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상업·공업지역이 섞인 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024. 7. 22. 발의 • 2024. 10. 22. 공포 및 시행

근로기준법(대안) 관련

4	예비검토 22025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상습체불사업주에게 보조 및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자료를 국가나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 • 박홍배 의원안 등 15개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 • 박홍배 의원안 2024. 8. 5. 발의 • 대안(2204330) 2024. 9. 12. 발의 • 대안 2024. 10. 22. 공포 및 시행
---	--------------	--------------	---



구분	의안번호	법 제명	내용
5	사후검토 220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채불사업주의 임금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상습채불사업주에게 보조 및 지원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자료를 국가나 지자체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이자 의원안 등 15개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 • 임이자 의원안 2024. 6. 7. 발의 • 대안(2204330) 2024. 9. 12. 발의 • 대안 2024. 10. 22. 공포 및 시행
관광진흥법(대안) 관련			
6	예비검토 22019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둠 • 정연욱 의원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통과됨 • 정연욱 의원안 2024. 7. 18. 발의 • 대안(2204304) 2024. 9. 5. 발의 •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양육비이행법(대안) 관련			
7	예비검토 2200703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함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선지급 결정 시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금융·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 마련 • 김남희 의원안 등 8건의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 으로 국회 통과됨 • 김남희 의원안 2024. 6. 20. 발의 • 대안(2204313) 2024. 9. 23. 발의 •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
8	이견조정 2201707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	■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선지급 결정 시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금융·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 마련 • 김미애 의원안 등 8건의 의원발의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장 대안 으로 국회 통과됨 • 김미애 의원안 2024. 7. 12. 발의 • 대안(2204313) 2024. 9. 23. 발의 •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



III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 제도 소개

1. 제도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주거나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원발의 법률안(이하 “지방관련법안”이라 한다)의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지원방법

- 매월 국회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서 지방 행정·재정과 관련이 있는 법안의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18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도지사협회,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에 알린다.

3. 제22대 국회 추진실적

■ 887건의 목록 제공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24. 5. 30.부터 10. 31.까지 약 5개월간 국회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5,721건⁶⁾이다. 이 중에서 지방관련법안의 목록을 매월 작성하여 통보하였으며, 총 통보건수는 887건⁷⁾(약 15.5%)이다. 지방관련법안의 목록은 1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찾아보기 쉽게 제공하였다.

- 5월·6월 165건, 7월 226건, 8월 206건, 9월 163건, 10월 127건 통보

- 10월 발의법안 중 지방관련법안 127건의 18개 유형별 분석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건수	구분 유형	건수
국·공유재산 특례	3	위원회	3
국가균형발전	12	재난안전	2
국정과제	5	재정·회계 제도	2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9	지방공무원	3
규제의 신설·강화	10	지방세 특례	6
기금	1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1
보조금·보조사업	16	탄소중립	2
사무의 신설·변경·폐지	84	행정절차	5
사업단지	3	누 계	188*
사용료·수수료	0		

* 하나의 법안에 여러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6) 대안 발의 건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7) 발의된 의원입법을 모두 검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 쟁점검토 내용 소개

- 지방관련법안 목록을 제공하면서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자체적으로 쟁점법안을 검토한 사례 중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면 유용할 사례도 1건씩 제공하였다.
- 7월: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0039호)
-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176호)
-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0600호)

4. 10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한 쟁점검토 사례

■ 대상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0600호)

■ 법안의 기본 정보: '24. 6. 18. 의원발의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주요 내용

-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당 임차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을 구입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구입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았더라도, 향후 주택 구입할 때 한번 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 쟁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조문으로 2025. 12. 31.까지만 유효하다.
- 임차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법제처 검토의견

○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25. 12. 31.) 연장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받지 않으려면,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은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5년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⁸⁾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1가구2주택 비과세 경과기간 3년이 있다고 하더라도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감면특례 일몰기한도 같이 개정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아파트 중 일부를 특례 대상으로

-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차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다.
- 개정취지와 유사한 사유로 법령을 개정한 최근 사례¹⁰⁾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를 보호 대상이 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 이는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기는 하나, 개정 취지가 유사한 법령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 2.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이하 생략)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③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제5호나목,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6. 민간임대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로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가 아닐 것

7. (생략)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발간일	2024. 12. 20.
발행처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8층

의원 입법에 필요한 정부 업무를 지원합니다.
*의원발의 전·후 법률안 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 법제조정총괄법제관	044-200-6802
의원입법 지원 총괄	044-200-6803
의원입법 지원	044-200-6805
의원입법 이견조정(1)	044-200-6814
의원입법 이견조정(2)	044-200-6808
법률안 모니터링	044-200-6822
■ 행정법제관	044-200-6568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04
행정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12
■ 경제법제관	044-200-6815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19
경제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13
■ 사회문화법제관	044-200-6820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1)	044-200-6810
사회문화 분야 의원입법 지원(2)	044-200-6807

메뉴 바로가기